

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特別市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민원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민원심의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.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. 영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항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제2항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부시장”으로, “부시장”을 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9조제2항중 “시민생활과장”을 “민원담당관”으로, “시민생활과 담당계장”을 “민원담당관 민원총괄계장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朴禧柱 다음은 議案番號 1299番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 어</p>	<p>리분, 異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제2호중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4조제2항중 “직위”를 “직급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2항제1호중 “법 제8조제6항”을 “법 제8조제7항”으로,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제1항중 “법 제8조제5항”을 “법 제8조제6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제1항중 “법 제8조제5항”을 “법 제8조제6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중 “법 제8조제10항”을 “법 제8조제11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13조중 “법 제8조제10항”을 “법 제8조제11항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朴禧柱 수고 많았습니다.</p> <p>다음은 議決을 留保했던 2002年월드컵蹴球大會誘致努力支持 및 蹴球場施設準備支援決議案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郭壽榮委員이 書面提出한 原案을 우리 委員會案으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가 없으므로 2002年월드컵蹴球大會誘致努力支持 및 蹴球場施設準備支援決議案은 郭壽榮委員이 發議한 案이 우리 委員會案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
---	---